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1009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0. 2.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20. 3. 6. 접수 제18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게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아래의 표2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D	90,000,000	2018. 5. 18.	2020. 11. 13.	중소기업자금대출
2	E	45,000,000	2018. 5. 18.	2020. 11. 13.	중소기업자금대출

<표2. 대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D	90,000,000	중소기업은행	2018. 5. 18.	100,000,000
2	E	45,000,000	중소기업은행	2018. 5. 18.	50,000,000

나. B은 위 각 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자를 연체하여 2020. 3. 31.자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의 표3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대위변제원금	대위변제이자	대위변제금합계
1	D	2020. 6. 23.	90,000,000	1,229,835	91,229,835
2	E	2020. 6. 23.	45,000,000	624,434	45,624,434
계			135,000,000	1,854,269	136,854,269

라. 원고와 C 사이에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8%이고,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1,866,340원이다.

마. B 은 2020. 2.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3. 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 후 C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의 연대보증채권(= 대위변제금 136,854,269원 + 법적 절차비용 1,866,34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부 F이 2017. 7.경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실제로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전소유자 G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2017. 7. 19.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F와 B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약1108호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8. 11. F은 벌금 500만 원, B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서 그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달리 동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의령군 ,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의령군 대 1441㎡
2. 경상남도 의령군 대 5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9.605㎡

(대지권의 표시)

- 1,2 소유권대지권 1491분의 67.2036

